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076
----------	-------

발의연월일 : 2025. 9. 17.

발 의 자 : 조계원 · 서미화 · 허성무
양문석 · 임오경 · 민형배
양부남 · 이기현 · 박수현
장종태 · 이개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로 지방 체육, 학교 체육, 직장 체육 및 노인과 청소년 체육의 진흥을 각각 규정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 및 시설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 변화로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장애인이 혼자 운동을 하기 어렵거나 체육시설과 거리가 먼 때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 체육 진흥 시책의 마련, 특화된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비용 및 시설 지원, 이동 가능한 체육시설의 이동 방안 및 체육지도자의 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5까지를 각각 제10조의4부터 제10조의6까지로 하고,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장애인 체육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형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체육 활동에 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동이 가능한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의 이동 방안을 마련하고, 그 이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는 장애인의 체력 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0조의3(장애인 체육의 진흥)</u> ①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 ②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형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u> ③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체육 활동에 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동이 가능한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의 이동 방안을 마련하고, 그 이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 ④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는 장애인의 체력 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체육지도자를 두</u>

	<u>어야 한다.</u>
<u>제10조의3</u>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생략)	<u>제10조의4</u>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현행 제10조의3과 같음)
<u>제10조의4</u> (합숙소의 관리) (생략)	<u>제10조의5</u> (합숙소의 관리) (현행 제10조의4와 같음)
<u>제10조의5</u> (운영규정의 마련 및 준수) (생략)	<u>제10조의6</u> (운영규정의 마련 및 준수) (현행 제10조의5와 같음)